

2010년 9월 11일 시행 경찰 2차 형사소송법 문제

문제 해설 노형석

총평

이번 2차 형소법 시험은 1차 보다는 지문이 길어져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약간 상향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신판례와 법령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이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따라서 형소법 수험방법을 요령이 아닌 정식으로 틀과 마인드를 잡고 기초적인 부분을 충실히 소화하고, 최신판례와 법령을 추가하여 대비하였다면 만점까지도 무난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구체적으로 최근 1~2년 이내의 최신 판례가 일부 출제되었고 기타는 전형적인 판례가 출제되었다.

또한 법령과 관련된 문제가 일부 출제되었고 특히 형사소송규칙에서 일부 출제가 되었는데 평소 기본서와 문제집만 치중하고 법령집을 소홀히 하였던 수험생은 낭패를 당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법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증거능력편에서는 전문증거와 관련된 판례와 법령의 요건의 난이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어 약간의 사고를 요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에서는 고도의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는 보이지 않아 평이한 출제라고 볼 수 있다.

즉시항고와 관련된 갯수문제와 헌법에 규정된 형소절차의 갯수문제는 이전 기출에서도 출제되었던 유형이고, 형소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기초암기 사항이므로 기초를 튼튼히 다진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기타 재판편 이후부터는 전형적인 출제 파트인 기관력과 관련된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일부상소와 관련된 판례가 다소나마 어려울 수 있었다고 보이나, 상소편을 올바르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기타 특별절차인 약식, 즉심, 소년사건에서는 전형적인 출제 패턴인 법령을 위주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1.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③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판결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는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제5조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252

② 제7조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252

③ 제8조 제2항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259

④ 제10조, 규칙 제4조 제1항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252, 253하단

2. 다음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보석청구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피고인의 공판기일출석권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 ㉤간이공판절차 |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 |
| ㉦전문법칙 | ㉧형사보상청구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③

해설

㉠㉢㉤㉦이 헌법에 규정이 없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9 박스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제243조의 2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54

② 제243조의 2 제2항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54

③ 제243조의 2 제3항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54

④ 제243조의 2 제5항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54

4.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 바 부촉빠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촉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뺏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
- 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

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대법원 2007도1903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15

② 대법원 2006도2339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16

③ 대법원 2005도1247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16

④ 대법원 2005도1247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16

5. 다음 중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 변사자의 검시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 또는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흥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제222조 제1항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22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3항

경찰관은 질문을 할 때에 흥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22

③ 제234조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5

④ 대법원 1969.7.22, 69도779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거나, 공범을 두둔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8

6.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②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③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 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

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정답 ①

해설

① 대법원 1999. 12.24, 99도3784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의 소멸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할 수 있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28, 통합 형사소송법 상권 p57

② 대법원 2009.12.10. 2009도7681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34 최신판례 박스 안

③ 대법원 1987.9.22, 87도1707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31

④ 대법원 2005.1.14, 2002도5411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36 하단

7.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반드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①

해설 ㉢만 옳다.

㉠ 제200조의4 제6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69

㉡ 대법원 2002. 6.11, 2000도5701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65

㉢ 대법원 1991. 9.24, 91도1314

범죄의 실행직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통합 형사소송법 상권 p124

㉣ 제213조의 2 제200조의5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69

8.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① 도망한 때

②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

④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정답 ③

해설 제102조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100, 101

9.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 ④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① 대법원 2008도 763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110 최신 판례 박스 안
- ② 대법원 2008도 763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110 최신 판례 박스 안
- ③ 대법원 1998.4.16, 97도25 통합 형사소송법 상권 p238
- ④ 대법원 2007.5.25.자 2007도82)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62

1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제184조)와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의 차이점인 것은?

- ① 청구시기
- ② 청구권자
- ③ 당사자참여권 인정
- ④ 청구사유의 소명

정답 ②

해설 제184조, 제221조의2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임에 반하여 증인신문청구권자는 검사에 한정되므로 양자의 청구권자에 차이가 있다.

양자의 청구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고, 당사자의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청구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121

1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조사 과정에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 ④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①대법원 1989.12.26, 89도1557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348

②대법원1997.4.11, 96도2865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조사 과정에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개정법으로는 제312조 제4항)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354 적법절차와 방식의 의미 유추, 통합형사소송법 객관식문제집 1

③대법원 2007.7.26, 2007도3219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364 하단 박스

④대법원2008.11.13. 2006도2556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341

12.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 ㉢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 ㉣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 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④

해설 ㉠㉢㉣㉤이 틀렸다.

㉠규칙 제132조, 제132조의2 제3항 도해식 통합 법령집 p229

㉡제290조

증거조사는 쟁점정리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205

㉢규칙 제133조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도해식 통합 법령집 p230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도해식 통합 형소법법령집, 통합 형사소송법 다음카페 : 노형석 형사소송법

㉔규칙 제134조 제4항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도해식 통합 법령집 p231**

㉔규칙 제135조

법 제312조 및 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도해식 통합 법령집 p234**

13.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는 것은?

-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②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정답 ③

해설

- ①은 제312조 제3항에 의해 적법절차와 방식 및 내용인정,
- ②는 제3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적법절차와 방식 및 실질적 성립의 진정, 특신상태
- ③은 제312조 제3항에 의해 성립의 진정의 인정
- ④는 제312조 제4항에 의해 적법절차와 방식 및 실질적 성립의 진정, 특신상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감정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가장 완화 되어 있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338~339의 박스안 증거능력 요건 비교**

14.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 ③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 ④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정답 ①

해설

①대법원 2003.10.10, 2003도3282

피고인의 공판조서의 열람·등사 또는 낭독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공판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아가 당해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도 증거능력이 없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297**

②대법원 2005.12.22, 2005도6557 **통합 형사소송법 하권 p300 하단, 301 상단 박스안 판례**

③대법원 1988.11.8, 86도1646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384 중단**

④대법원 1998.12.22, 98도2890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542 심화학습 8의 ①번 판례**

15.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④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당해 공소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

정답 ②

해설

①대법원 1985.5.28, 85도21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16**

②대법원 1996.4.12, 96도158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16**

③대법원 2002.11.22, 2001도849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16**

④대법원 2002.11.22, 2001도849, 93도2080**전합.**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17 상단**

16. 경찰수사권 독립론에 관한 설명 중 긍정설의 논거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 ① 검사는 법률 전문가일 뿐이고, 수사전문가는 아니다.
- ② 범죄의 예방과 진압·수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 ③ 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④ 경찰수사권을 독립시키려면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 내지 전문화, 인권의식의 체질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지방분권화 등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④는 부정설의 하나인 시기상조론의 논거이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18

17.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단순일죄, 포괄일죄 및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 ④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이러한 경우로는 일부 상소가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대법원 2001.2.9, 2000도5000, 대법원 1985.11.12, 85도1998, 대법원 2005.1.27, 2004도7488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33~434 박스안

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5항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34 도해식통합법령집 p342

③ 대법원 2004.12.10, 2004도3515

실체적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자 검사가 불복의 범위란에 아무런 기재도 아니하고 판결주문란에 유죄부분의 형만을 기재하고 무죄의 주문은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도 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보아야 한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34 하단 박스안

④ 대법원 2001.2.9, 2000도5000,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33~434

18.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기피신청각결정 | ㉡ 보석허가결정 |
| ㉢ 구속취소결정 | ㉣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
|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 상소권회복결정 |
| ㉦ 재정신청에서 비용부담결정 |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 ㉢이 즉시항고 할 수 없는 재판이다. ㉠은 보통 항고가 허용되는 경우이고, ㉢은 불복할 수 없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5 박스안

19.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②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벌금, 과료 또는 몰수가 징역, 금고,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 ③ 즉결심판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또는 고지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즉결심판에 관한절차법 제10조 즉결심판절차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82

② 제448조 제1항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73, 통합형사소송법 하권 p478 상단

③ 즉결심판에 관한절차법 제11조 제5항

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82

④ 제453조 제1항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474

20. 소년법에 관한 형사절차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③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 ④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소년법 제50조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503

② 소년법 제49조 제1항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502

③ 소년법 제55조 제1항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503

④ 소년법 제4조 제2항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p501

도해식 통합 형사소송법

도해식 통합 법령집

통합 형사소송법

노형석

다음카페 : 노형석 형사소송법

우리경찰학원